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512-1769849
신청일	2025-12-16 14:48:56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쿠팡물류센터 불법 증축에 따른 건축법 위반
내용	쿠팡물류센터에서는 높은 층고를 활용해 중간층(중층)을 설치하여 1.5~2배 가량의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를 '적층식 랙'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층식 랙 설치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에 '적층식 랙'이 아닌 바닥면적의 증가가 있는 '증축'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애매한 지침으로 쿠팡의 불법을 감추려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화재 등에 매우 취약하고 환기, 안전사고 등의 큰 재해위험을 가지고 있는 쿠팡물류센터의 '중층'을 전수조사해서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첨부서류.zip 쿠팡물류센터의 불법증축 신고.pdf
피민원인명	쿠팡
피민원인 근무처명	
피민원인 주소	
피민원인 연락처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12-2053717
접수일	2025-12-24 08:47:01
담당자(연락처)	권영신 (044-201-4838)
처리에정일	2026-01-14 23:59:59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6-01-05 23:59, (변경후) 2026-01-14 23:59 - 사유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5-12-29 08:57:58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통지일	2026-01-12 17:13:59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 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 적층식 랙 해당 여부 및 전수조사 요청 2.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 건축법령을 운영함에 있어 창고시설(공장 등에 부속되는 창고시설) 내 설치하는 적층식 랙(한국산업규격 종전 KS A 2163, 현행 KS T 2027에 정의된 '산업용 랙'의 일종)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이고, 필요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

이전 등이 가능하며, 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 되는 구조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적합한[①창고시설(공장 등에 부속되는 창고시설) 내 설치하는 지, ②적층식 랙(한국산업규격 종전 KS A 2163, 현행 KS T 2027에 정의된 '산업용 랙'의 일종)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인지, ③필요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 등이 가능한지, ④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 되는 구조물로 볼 수 없는지 등] 경우에만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의 적층식 랙이 KS T 2027 산업규격에 적합한지 또는 적층식 랙의 구조,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KS T 2027 기준에 대한 사항은 해당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현황과 건축법령 및 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요하는 승인, 허가, 신고 등의 업무와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관리·지도사항, 민원사항 등은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업무이기에 우리 부에서 직접 조사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83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 답변확인 후 바쁘시더라도 만족 여부를 표기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